

주식회사 아이패밀리에스씨

定 款

정 관

제 1 장 총 칙

제1조(상호) 회사는 주식회사 아이패밀리에스씨로 한다.
영문으로 iFamilySC Co., Ltd.로 표기한다.

제2조(목적)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전자상거래업
2. 상품중개업
3. 가정용품, 가전제품 관련 도, 소매업 및 무역업
4. 소프트웨어 개발, 제조 및 공급업
5. 소프트웨어 설비자문업
6. 컴퓨터 및 정밀주변기기 개발, 제조 및 공급업
7. 인터넷 및 전자상거래관련 데이터베이스업
8. 인터넷 및 전자상거래관련 정보처리 및 제공업
9. 전자출판업
10. 기타 서적 출판업
11. 일반여행업
12. 광고대행업
13. 부동산 임대 및 전대업
14. 전시 및 행사 대행업
15. 예식장업
16. 외국인 환자 유치업
17. 화장품의 제조 및 도, 소매업
18. 음반 기획, 제작, 유통 및 판매업
19. 뉴미디어 영상기술을 이용한 방송, 드라마, 영화, 영상 제작 및 판매업
20. 대중문화예술 기획 및 컨설팅업
21. 연예인 에이전시, 엔터테인먼트, 매니지먼트, 마케팅 컨설팅업
22. 상조업
23. 위 각호와 관련된 무역업 및 수출입업
24.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제3조(본점의 소재지) (1) 회사의 본점은 서울특별시에 둔다.

(2)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국내외에 지점, 출장소, 사무소 및 현지법인을 둘 수 있다

제4조(공고방법)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ifamily.co.kr>)에 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서울시에서 발행되는 일간 매일경제신문에 한다.

제 2 장 주 식

제5조(발행예정주식의 총수)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100,000,000주로 한다.

제6조(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회사가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10,000주(1주의 금액 5,000원 기준)로 한다.

제7조(1주의 금액)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금500원으로 한다.

제8조(주권) 본 회사의 주권은 기명주식으로서 1주권, 5주권, 10주권, 50주권, 100주권, 500주권, 1,000주권 및 10,000주권의 8종류로 한다.

다만, [주식·사채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식 등을 전자등록하는 경우에는 동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8조의2(주식 등의 전자등록) 회사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식 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 계좌부에 주식 등을 전자등록하여야 한다.

제9조(주식의 종류) (1) 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종류는 기명식 보통주식과 종류주식으로 한다.

(2) 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이익배당 또는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우선주식,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에 관한 주식, 상환주식, 전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한다.

제9조의2(이익배당, 잔여재산분배, 의결권 배제, 제한, 주식의 상환 및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 (1) 회사는 이익 및 잔여재산분배에 대한 우선배당, 의결권 배제, 제한 또는 주식의 상환 및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이하 이 조에서 "종류주식"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으며, 종류주식의 명칭 및 구체적인 내용은 정관의 범위 내에서 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다.

(2) 제5조의 발행예정주식총수 중 종류주식의 발행한도는 20,000,000주로 한다.

(3) 우선배당권이 있는 종류주식에 대하여는 우선배당하며, 1주의 가액을 기준으로 연 0% 이상 10% 이내에서 발행 시에 이사회가 정한 배당률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한다.

(4) 우선배당권이 있는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배당을 하고 보통주식에 대하여 종류주식의 배당률과 동률의 배당을 한 후, 잔여배당가능이익이 있으면 보통주식과 종류주식에 대하여 동등한 비율로 배당한다.

(5) 우선배당권이 있는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배당을 하지 못한 사업연도가 있는 경우에는 미배당분을 누적하여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6) 의결권이 없는 종류주식의 주주에게는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까지는 의결권이 있다.

(7) 본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종류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회사가 발행하기로 한 주식으로, 주식배당 및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 (8) 종류주식의 존속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0년으로 하고, 이 기간 만료와 동시에 전환만료일에 보통주식으로 전환한다. 다만, 위 기간 중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이 완료될 때까지 그 기간은 연장된다.
- (9) 제8항의 규정에 의해 발행되는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10) 회사는 종류주식을 발행함에 있어서 이사회 결의로 주주의 상환청구 또는 회사의 선택에 따라 회사의 이익으로써 소각할 수 있는 상환주식으로 정할 수 있다.
 - 1. 종류주식을 회사의 선택으로 상환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상환주식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에 또는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다.
 - 2. 주주에게 상환청구권이 부여된 경우 주주는 자신의 선택으로써 상환주식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주주는 상환할 뜻 및 상환 대상 주식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단, 회사는 협존 이익으로 상환대상주식 전부를 일시에 상환하기 충분하지 않을 경우 이를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다.
 - 3. 상환가액은 발행가액의 100%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행 시 이사회에서 정한 금액을 더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상환가액을 조정하려는 경우 이사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는 뜻, 조정사유, 조정방법 등을 정하여야 한다.
 - 4. 상환기간(또는 상환청구 기간)은 종류주식의 발행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10년이 되는 날의 범위 내에서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단 상환주식에 대하여 우선적 배당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회사의 이익이 부족하여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상환기간은 연장된다.
 - 5. 회사는 주식의 취득의 대가로 현금 이외의 유가증권이나(다른 종류의 주식은 제외한다) 그 밖의 자산을 교부할 수 있다.

제10조(신주인수권) (1)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 (2)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게 되는 경우
 - 2. 「상법」 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3. 발행하는 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 배정하는 경우
 - 4.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해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7.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 주권을 신규 상장하거나 협회등록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 (3) 제(2)항의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4)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제11조(주식매수선택권) (1) 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범위 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으며, 벤처인증 받은 경우에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범위 내에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상법」 제542조의3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범위 내에서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으며,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은 경영성과 또는 주가지수 등에 연동하는 성과연동형으로 부여할 수 있다.
- (2)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에는 그 부여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대상자는 회사의 설립·경영과 기술 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감사 또는 피용자 및 「상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이 정하는 관계회사의 이사·감사 또는 피용자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5항에서 정한 자로 한다. 다만 회사의 이사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 (4)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법」 제542조의8 제2항의 최대주주(이하 "최대주주"라 함)와 주요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다만, 회사 또는 제3항의 관계회사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감사인 경우를 포함한다)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 (5) 임원 또는 직원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 (6)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임 또는 사직한 경우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3. 회사의 파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4.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 (7) 회사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방법으로 부여한다.
 1.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새로이 기명식 보통주식(또는 기명식 우선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방법
 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기명식 보통주식(또는 기명식 우선주식)의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방법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방법

- (8)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한 날부터 5년 내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 내에 사망하거나 정년으로 인한 퇴임 또는 퇴직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 (9)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1조의2(우리사주매수선택권) (1) 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범위 내에서는 이사회의 결의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 (2)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한다.
 - (3)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부터 6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이내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의 결의로 그 기간 중 또는 그
기간 종료 후 일정한 행사기간을 정하여 권리를 행사하게 할 수 있다.
 - (4)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이
정하는 평가가격의 100분의 70 이상으로 한다. 다만,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로서 행사가격이 당해 주식의 권면액보다 낮은 때에는 그 권면액을
행사가격으로 한다.
 - (5)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 ①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우리사주조합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
 - ② 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 ③ 기타 우리사주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 (6)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신주의 배당기산일)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발행한 신
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
영업년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13조(주식의 소각)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
할 수 있다.

- 제14조(명의개서대리인) (1)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을 둔다.
- (2) 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영업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3) 회사는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또는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 주권의
발행, 신고의 접수,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 다만,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등을 전자등록하는 경우 주식의 전자등록, 주주명부의 관리,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

(4) 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의 증권명의개서대행 업무규정에 따른다.

제15조(주주 등의 주소, 성명 및 인감 또는 서명 등 신고) (1) 주주와 등록 질권자는 그 성명, 주소 및 인감 또는 서명 등을 제14조의 명의개서대리인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2) 외국에 거주하는 주주와 등록 질권자는 대한민국 내에 통지를 받을 장소와 대리인을 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 (3) 제(1)항 및 제(2)항에 정한 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이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 (4) 제(1)항에서 제(3)항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 계좌부에 주식 등을 전자등록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제15조의2(주주명부) 회사의 주주명부는 「상법」 제352조의2에 따라 전자문서로 작성할 수 있다.

제16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① 회사는 매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주주의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한다.

- ②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 ③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3개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이사회의 결의로 3개월내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주명부의 기재변경 정지와 기준일의 지정을 함께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주주명부 폐쇄기간 또는 기준일의 2주간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3장 사 채

제17조(전환사채의 발행) (1)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사채의 액면총액이 10,000,000,000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사채의 액면총액이 10,000,000,000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사채의 액면총액이 10,000,000,000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2) 제1항의 전환사채에 있어서 이사회는 그 일부에 대하여만 전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도 이를 발행할 수 있다.
- (3)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 (4)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해당 사채의 발행일 후 1월의 경과하는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하며, 모집 이외의 방법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발행 후 1년이 경과한 후에 전환할 수 있는 조건으로 발행하여야 한다. 다만,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서 전환청구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5)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과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 지급에 관하여는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6) 전환사채발행에 있어서 전 각항 이외의 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제18조(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1)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1. 사채의 액면총액이 10,000,000,000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2. 사채의 액면총액이 10,000,000,000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3. 사채의 액면총액이 10,000,000,000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2)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 (3)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그 발행가액은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 (4)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발행일 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서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5)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이익참가부사채의 발행) (1)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10,000,000,000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주외의 자에게 이익참가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2) 제(1)항의 이익참가부사채는 보통주식에 대한 이익배당의 100분의 10비율로 이익배당에 참가할 수 있다.
- (3) 이익참가부사채에 대해서는 분기배당은 하지 아니한다.
- (4) 제(1)항의 이익참가부사채의 가액은 발행시에 이사회가 정한다.

제20조(교환사채의 발행) (1) 회사는 이사회결의로 사채 액면총액이 10,000,000,000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2) 교환사채의 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20조의2(사채 발행의 위임) 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

제21조(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제14조, 제15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 한다. 다만,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등을 전자등록하는 경우에는 제15조 준용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제21조의2(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하 권리의 전자등록) 회사는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 할 수 있다.

제 4 장 주 주 총 회

제22조(소집시기) (1)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한다.

- (2) 정기주주총회는 매사업년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제23조(소집권자) (1)주주총회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 (2) 대표이사가 유고 시에는 제3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4조(소집통지 및 공고) (1)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2주간 전에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 (2)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회의일 2주간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 목적사항을 서울시에서 발행하는 매일경제신문과 한국경제신문에 각각 2회 이상 공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전자공시 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 (3) 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집통지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함에 있어 회의의 목적사항이 이사 또는 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이사후보자 또는 감사후보자의 성명, 약력, 추천인 그밖에 「상법시행령」이 정하는 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 (4) 회사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주총회의 소집통지 또는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542조의4 제3항이 규정하는 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사항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회사의 본·지점, 명의개서대행회사,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에 비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조(소집지) 주주총회는 본점 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제26조(의장) (1)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

- (2) 대표이사가 유고 시에는 제3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7조(의장의 질서유지권) (1) 주주총회의 의장은 그 주주총회에서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언행을 하거나 현저히 질서를 문란케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취소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 (2) 주주총회의 의장은 의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주의 발언 시간 및 회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28조(주주의 의결권) 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제29조(상호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 회사, 회사 및 회사의 자회사 또는 회사의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 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제30조(의결권의 불통일행사) (1) 2 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회일의 3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2)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1조(의결권의 대리행사) (1)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2) 제(1)항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주주총회의 결의방법)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과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제33조(주주총회의 의사록) (1) 주주총회의 의사에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2) 의사록에는 그 경과요령과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점과 지점에 비치한다.

제 5 장 이 사 · 이 사 회 · 대 표 이 사

제1절 이 사

제34조(이사의 수) (1) 회사의 이사는 3인 이상 8인 이내로 하고, 사외이사는 이사총수의 4분의 1 이상으로 한다.

제35조(이사의 선임) (1)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2) 이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3)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상법」 제382조의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6조(이사의 임기) (1)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그러나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 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2) 보궐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와 같은 기간으로 한다.

제37조(이사의 직무)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및 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하며,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위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8조(이사의 의무) (1)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이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 이사는 재임 중뿐만 아니라 퇴임 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39조의1(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1)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2) 이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

제2절 이 사 회

제40조(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1)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

(2)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 7일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다른 이사는 소집권자인 이사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소집권자인 이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다른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4)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제(2)항의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5) 이사회의 의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의 소집권자로 한다.

(6) 이사는 3개월에 1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1조(이사회의 결의방법) (1) 이사회의 결의는 법령과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2)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3) 이사회의 결의에 관해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42조(이사회의 의사록) (1)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2)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43조(상담역 및 고문)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상담역 또는 고문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제44조(위원회) (1) 회사는 이사회 내에 필요에 따라 각종 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각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3) 위원회에 대해서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관 제40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절 대표이사

제45조(대표이사의 선임)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제46조(대표이사의 직무)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회사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 6 장 감 사

제47조(감사의 수) 회사는 1인 이상 3인 이내의 감사를 둘 수 있다.

제48조(감사의 선임) (1)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2) 감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과는 별도로 상정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3)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감사의 선임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다만, 소유주식수의 산정에 있어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는 합산한다.

제49조(감사의 임기와 보선) (1)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 시까지로 한다.

(2) 감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정관 제47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0조(감사의 직무와 의무) (1) 감사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2) 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3)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4) 감사에 대해서는 정관 제38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5) 감사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6) 감사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적은 서면을 이사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 (7) 제(6)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51조(감사록) 감사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52조(감사의 보수와 퇴직금) (1) 감사의 보수와 퇴직금에 관하여는 제3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2) 감사의 보수를 결정하기 위한 의안은 이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과 구분하여 상정·의결하여야 한다.

제 7 장 회 계

제53조(사업년도) 회사의 사업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4조(재무제표 등의 작성 등) (1) 대표이사는 「상법」 제447조 및 제447조의2의 각 서류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2)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 전에 제(1)항의 서류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3) 감사는 정기주주총회일 1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4) 대표이사는 제(1)항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 전부터 본점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 (5) 대표이사는 「상법」 제447조의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제447조의2의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 (6) 제(5)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상법」 제447조의 각 서류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고,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상법」 제447조의 각 서류를 이사회 결의로 승인할 수 있다.
- (7) 제(6)항에 따라 승인 받은 서류의 내용은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8) 대표이사는 제(5)항 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55조(외부감사인의 선임) 회사가 외부감사인을 선임함에 있어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감사는 감사인 선임위원회(또는 감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외부감사인을 선정하여야 하고, 회사는 그 사실을 외부감사인을 선임한 이후에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제56조(이익금 처분) 회사는 매 사업년도의 처분전 이익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 이익준비금
2. 기타의 법정적립금
3. 배당금

4. 임의적립금
5. 기타의 이익잉여금처분액

- 제57조(이익배당) (1) 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으로 할 수 있다.
- (2)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각각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할 수 있다.
 - (3) 제(1)항의 배당은 매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 (4)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제54조 제(6)항에 따라 제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이익배당을 정한다.

- 제58조(분기배당) (1)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월.6월 및 9월의 말 일(이하 “분기배당 기준일”이라 한다)의 주주에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2에 따라 분기배당을 할 수 있다.
- (2) 제1항의 이사회 결의는 분기배당 기준일 이후 45일 내에 하여야 한다.
 - (3) 분기배당은 직전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1. 직전결산기의 자본금의 액 (개정 2012. 2. 10)
 2. 직전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직전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하기로 정한 금액
 4. 직전결산기까지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목적을 위해 적립한 임의준비금
 5. 「상법 시행령」 제19조에서 정한 미실현이익
 6. 분기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 (4) 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분기배당 기준일 이전에 신주를 발행한 경우(준비금의 자본전입, 주식배당, 전환사채의 전환청구,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분기배당에 관해서는 당해 주는 직전사업 연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다만, 분기배당 기준일에 발행된 신주에 대하여는 최근 분기배당 기준일 직후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 (5) 제9조2의 종류주식에 대한 분기배당은 보통주식과 동일한 배당률을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1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단서조항, 제8조의2, 제14조 (3)항 단서조항, 제15조 (4)항, 제15조의 2, 제21조, 제21조의2 개정 규정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 등록계좌부에 주식 등을 전자등록 하는 경우에 시행한다.

(주)아이패밀리에스씨

서울 강남구 논현로 150길, 7 논현동 빌딩

김태욱, 김성현